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찬성자 10명)

나. 의안번호 : 제 2104 호

다. 발의일자 : 2017. 9. 27.

라. 회부일자 : 2017. 10. 12.

2.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함(안 제49조제2항)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정부조직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사항과 상위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 조직이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로 개편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49조제2항은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주체를 현행 ‘국민안전처장관’에서 조직개편 된 ‘소방청장’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이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1)에 따른 작성 주체는 소방청장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시·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 소방청장----- ----- ----- ----- ----- -----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 ----- -----

1)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